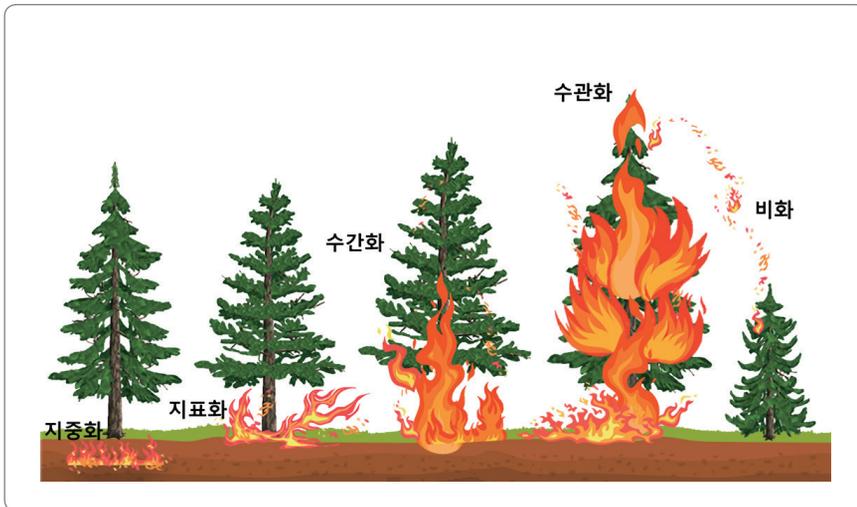


## Q1 | 산불의 정의는 무엇인가요?

**A** 산불은 「산림보호법」 제2조 제7호에서 정하는 “산림<sup>1)</sup>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·풀·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”으로 정의합니다.

산불은 어느 부위가 타는지에 따라 땅 속의 부식층을 태우는 지중화(地中火), 지표에 있는 잡초·관목·낙엽 등을 태우는 지표화(地表面火), 서 있는 나무의 줄기를 태우는 수간화(樹幹火), 그리고 서 있는 나무의 가지와 잎을 태우는 수관화(樹冠火), 산불의 불기둥으로 인해 상승한 불똥이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가 또 다른 산불을 만들어 내는 비화로 구분합니다. 우리나라의 대형산불은 대부분 지표화로 시작하여 점차 수관화로 번져 비화를 일으키는 특징이 있습니다.



산불의 종류(타는 부위에 따라 구분)

1) '산림'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, 다만, 농지, 초지(草地), 주택지, 도로,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(立木)·죽(竹)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.

-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·죽과 그 토지
-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·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
- 입목·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
-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(임도)
- 산림 안에 있는 암석지·소택지